

의안번호	2202650
의 퇴 인	조인철 의원
회 답 일	2024. 9. 2.
추 계 번호	24B2642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2조의4 (중소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자 지원) 신설	정부는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「중소 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(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 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 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2조의4 (중소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중소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(안 제92조의4 신설)

-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·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임
- 2024년 5월말 기준 TV, 라디오, 데이터 3개 방송유형으로 구분하여 영화, 드라마, 음악, 스포츠, 교양문화, 어린이, 종교 등의 방송분야에 368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음

[표 1]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현황(2024년 5월말 기준)

방송유형	TV	라디오	데이터	합계
등록사업자 수	312개	36개	20개	368개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(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개정안 시행으로 정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중소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 제작 비용과 관련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기준 및 사업자별 적정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개정안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
- 참고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지원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하여 방송사업자, OTT사, 독립제작사 등에 대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¹⁾을 수행 중으로, 동 사업을 통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133편 119억 7,900 만원을 지원하였음

[표 2]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

- (사업목적)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방송·OTT 콘텐츠를 육성하여 국내 미디어와 콘텐츠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, 콘텐츠 다양성을 확보
- (지원대상) 방송사업자, OTT사, 제작사(방송사, OTT사와 협업시) 등
- (PP²⁾ 지원현황) 최근 3년간 총 133편 11,979백만 원 지원
- (연도별) 2021년도 72편 5,928백만원, 2022년도 39편 3,846백만원, 2023년도 22편 2,205백만원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1) 방송콘텐츠 진흥 세부사업(방송통신발전기금, 1131-301)의 내역사업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배아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